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청년인턴(일반) 채용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에서 청년인턴(일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5월 20일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1 채용분야, 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행정지원직	청년인턴 (일반)	2명	○ 캠퍼스 교무 및 일반 등 행정업무 지원

※ 근무지 주소: 울산 중구 산전길 155,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2 근무조건 및 보수

○ (계약기간) 2026. 6. 15. ~ 2026. 7. 14. (1개월)

○ (근무시간) 주 5일, 일 4시간(09:00~13:30 혹은 13:30~18:00)

※ 휴게시간 30분 포함.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

○ (보수)

채용직급	금액	내용
행정지원직	월 1,278,440원	○ 보수는 중식보조비 포함, 세전 금액 ○ 4대보험 가입 ○ 보수는 임용일에 따라 일할 계산함 ○ 그 외 근로조건 등은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비정규직직원운용규칙」 등에 따름

- (채용우대) 청년인턴 수료자는 사무직원 공개채용 시 우대(필기시험 3% 가점)
- (취업지원) 취업시험 응시, 취업박람회 참석 등 구직활동 시 유급휴가 사용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

구분	자격기준
청년인턴 공통	○ (연령)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연장함(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학력) 제한 없음 ○ 기존 한국폴리텍대학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붙임 2] 참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응시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 10. <삭제>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 1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4 우대사항

○ (우대사항)

분야	주요내용		가산점수
법 정 가산점	취업지원 대 상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만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의 5% 또는 10%

분야	주요내용		가산점수
사 회 형 평 가산점	장 애 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일반)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또는 10%(중증)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 문 화 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 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 청 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부여함
-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5 원서접수

구분	내 용
접수기간	○ 2026. 5. 20.(수) 공고시부터 ~ 5. 28.(목) 16시까지
접수방법	○ E-mail을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방문 접수 ※ 현장 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기간 중 평일 09:00~18:00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 최종일은 16:00까지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서명하여 제출 ○ E-mail: hyeji2103@kopo.ac.kr ※ E-mail 제목 및 파일명은 응시 분야에 따라 '청년인턴(일반)_성명' 형식으로 기재 ※ 대학 지정서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접수되지 않음

6 심사방법 및 일정

내용	일정	방법
서류심사	26.06.01.(월)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 부여
서류합격자 발표	26.06.01.(월) 16:00	○ 면접대상자 발표(개별안내)
면접심사	26.06.04.(목) 10: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가산점 기준에 따른 가산점(3,5,10)
최종합격자 발표	26.06.05.(금) 16:00	○ 개별안내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면접심사 평가항목중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면접성적 불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 고득점자 順으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함
합격자 등록	~26.06.12.(금) 15:00	○ 합격자 임용서류(원본)를 갖추어 행정처로 제출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구분	대상서류	양식 및 방법	비고
원서 접수 시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 하단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참고하여 작성	소정양식 [서식1]	필 수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정양식 [서식2]	필 수

구분	대상서류	양식 및 방법	비고
면접 시	① 경력 관련 증명서 각 1부	원본 제출	해당자
	② 직무 관련 자격(면허)증 또는 수료증 각 1부	사본 제출(원본 제시)	해당자
	③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확인서 1부 ※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제출	원본 제출	해당자
	④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원본 제출	해당자
	⑤ 저소득층 증명서류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부모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제출	해당자
	⑥ 다문화가족자녀 증명서류 각 1부 ※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원본 제출	해당자
	⑦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원본 제출	해당자
	⑧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1부	원본 제출	해당자
최종 합격 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원본 제출	필 수
	②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남자에 한함 ※ 전역예정자의 경우 전역예정증빙서류 제출	원본 제출	해당자
	③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원본 제출	필 수
	④ 반명함판 사진 1매	원본 제출	필 수
	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소정양식(서식3)	필 수
	⑥ 공정채용확인서 1부	소정양식(서식4)	필 수
	⑦ 친·인척 현황 조사지 1부	소정양식(서식5)	필 수
	⑧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소정양식(서식6)	필 수
	⑨ 보안서약서 1부	소정양식(서식7)	필 수
	⑩ 통장사본 1부	사본 제출	필 수

※ 제출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 시 작성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하고,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 건강검진 수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 예정자는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기를 권장함

8 유의사항

- 우리 대학은 공정·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받지 않습니다.
-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취소 및 불합격 처리, 향후 응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성별, 연령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한 작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전형 일정, 장소 등은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고, 공고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귀책입니다.
- 부정행위자, 결격사유 해당자 및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는 합격자 등록 기간 내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채용 계획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지원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결정에 따릅니다.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원자의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최종합격자 제외),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반환대상서류: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반환청구방법: 별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hyeji2103@kopo.ac.kr로 제출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반환방법: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채용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제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그 외 문의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행정처(☎ 052-290-1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직인생략

[별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지역대학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